

# 구제역 예방접종 전국 확대

(참조 : 농수산식품부, 편집 : 미트저널사)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전국 확대와 관련, '11년 1월 13일 제11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접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전국의 모든 소 및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약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그 우선순위는 ①전국(제주 제외)의 모든 소 및 전국 종돈장의 돼지(종돈, 후보 모돈, 비육돈) ②전국의 모든 모돈 ③돼지 비육돈 순으로 집중키로 했다.

그 1단계로 지난 1월 15일~1월 16일간 도착하는 백신 225만두분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비접종 소 146만두와 전국(제주 제외) 종돈장의 돼지(종돈, 후보 모돈, 비육돈) 65만두에 대해 우선 접종키로 했다.

### 〈비접종 소 접종(146만두)〉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8만두
- 전남, 전북(미접종 지역 추가), 경남 : 112만두
- 경북(미접종 10개 시군 추가) : 26만두

2단계로는 비접종지역 모돈 30만두 및 전국 비육돈 637만두, 제주 지역 소 및 돼지 50만두에 대해 접종하되 지난 1월 21일 이후 백신수급상황(1월 21일~1월 31일간 600만두 도착 예정)을 고려하여 접종 지역 우선순위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 [이동해제 절차, 예방접종 완료 한달 후]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접종지

역 내 농가들의 이동제한 해제 절차는 접종 완료 한 달 후 혈청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경계지역부터 해제된다.

### ▲ 발생가능 반경 10km 내의 소 예방접종한 경우

- 이동제한 해제 과정 : 1차 예방접종이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한 후 경계지역(3~10km)부터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그 이후 위험지역(~3km)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 이동제한 해제 전 : 수매를 위해서는 마지막 발생농장(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매몰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한다. 경계지역 내의 소, 돼지는 임상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한다.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 후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수매한다.

- 이동제한 해제 후 : 이동을 위해서는 농가는 시군에 이동 신고를 하고 시군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농가에게 이동확인서를 통보한다. 농가는 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에게 매매를 하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단 구제역 전국 종식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 하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할 경우**  
 - 이동제한 해제 과정 :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경제지역 및 외곽지역에 대한 임상 검사 및 혈청검사 후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해제 전 수매와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 및 출하하는 위의 10km 예방접종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비발생 시·군에서 전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한 경우**  
 - 예방접종된 소는 접종 후 '최고기 이력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며 별도의 검사 없이 이동이나 출하가 허용되며 농가는 평상시와 같이 양도·양수시에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예방접종 후 구제역이 지역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앞서 언급된 발생 시·군 전 지역 예방접종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제역 피해 따른 지원 계획]**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구제역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또한 관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원자격 중 연체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

다. 그리고 비농업용 부동산(주택 제외 주택, 대지 등)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조합(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신청해야하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개요**

지원대상 :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부채 1천5백만원 이상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을 대상

2년 이상 연체된 적이 없었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산종지) 보유자 등 지원 제외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 향후 2년 이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 및 경제사업 연체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거나 품목(업종)별 1회전 운전자금 등 신규사급 대출

○ 지원조건 : 원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11년 지원규모(계획) : 600억원

**이동제한 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침**

각 시·도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저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이

려움이 발생하는 농가 및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입을 제한받는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
-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의 경영안정자금
- 사업기간 : '11년 1월~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 사업완료일은 추후 공지할 계획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기준 (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당시 사육두수로서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확인된 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농가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 :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도축장 등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 농가·업체 희망시 이동제한(폐쇄)기간 중에도 해제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가능
  -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
-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두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

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 돼지(육성돈·성돈) 보상금 상한 가격

구제역 확산으로 돼지의 이동제한 규모가 증가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 시장 가격이 왜곡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매몰 가축의 적정한 보상과 농가의 절제한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돼시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상한선)을 조정키로 했다.

- 현행 : 매월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 산정)
- 조정 : 매월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으로 하되, 전년도(10년 1월 1일~12월 31일)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